

「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4월 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4월 14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4월 1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민원토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민원인의 폭언·폭행·성희롱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민원 처리 담당자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2)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항 규정(안 제5조)
- 3)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 규정(안 제6조 ~ 제7조)
- 4)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「민원처리법」의 개정으로

민원인의 폭언·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되었고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의무적 조치사항이 규정된 바,

○ 본 조례안은

대상에 공무원뿐만이 아닌 관내 모든 민원 처리 담당자를 포함하고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을 확충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.

○ 검토결과,

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, 실효성 있는 시책과 홍보 등을 통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